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형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993

발의연월일: 2025. 2. 7.

발 의 자:최형두・박정훈・이종욱

박충권 · 김예지 · 신성범

송석준 · 강대식 · 서천호

인요한 • 박희승 • 구자근

박형수 · 김장겸 · 윤영석

서일준 • 정성국 • 윤한홍

김종양 · 김태호 의원

(2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(이하 "직장 내 괴롭힘"이라 함)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한편 최근 세상을 떠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유족이 방송국 동료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나 현행법상 프리랜서인 기상캐스터가 원칙적으로 사업자이기 때문에 '근로자성'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재판의 쟁점이 되고 있음.

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상 근로 자 여부와 상관없이 아나운서 · 기상캐스터 · 웹디자이너 등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를 제공받는 사람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때는 근로자로 인정함으로써 프리랜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76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장의2에 제7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6조의4(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특례)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를 제공받는 사람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76조의4(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
	특례)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
	하여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
	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를 제공
	받는 사람으로부터 그 대가를
	지급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2조
	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6조
	의2 및 제76조의3을 적용할 때
	에는 근로자로 본다.